

개인전자보증거래 취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이하 “안심전세App”이라 한다) 출시에 따라, 안심전세App에 포함된 대국민 대상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운영기준을 개인전자보증거래 취급세칙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안심전세App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을 추가함 (안 제8조 등)

나. 전자보증신청시 신규 수집·이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함 (안 제9조)

다. 안심전세App의 “전세피해예방 서비스*”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설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주택진단 : 이용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주택의 매매 시세, 유사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경매 낙찰가율 등 정보를 제공

* 법률상담 : 이용자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1:1로 변호사가 답변

* 집주인조회 : 임대인이 전세보증(공사, HF) 보증금지 대상자(집중관리다주택 채무자 여부 등 포함)인지 여부를 조회

라.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함 (안 제22조)

마. 안심전세App 2.0 출시에 따라, 기존의 ‘개인전자보증거래 이용약관’과 ‘안심전세App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합 (안 별지서식 제1호)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3년 05월 30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 보증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16층 개인보증처
- 담당자(이메일) : 이유진 대리(qer0101@khug.or.kr)
- 전화번호 : 051-998-6724
- 팩스번호 : 051-998-2330

4. 예고기간 단축사유(기간 20일 미달 시)

- 안심전세 App 업그레이드에 맞춰 조속한 사규 개정 필요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자연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증(이하 “개인전자보증”이라 한다)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취급 및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운영</u> -----.	안심전세App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도록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보증업무를 포함하여 정보 기술분야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의미합니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 --한다. 12. “ <u>애플리케이션(이하 “App”이라 한다)</u> ”이라 함은 <u>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한다.</u>	조문 정비 안심전세 세부 업무처리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추가
제4조(개인전자보증의 대상) ① 개인전자보증의 대상은 자	제4조(개인전자거래의 대상) ① -- <u>전자거래</u> -----	용어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연인을 대상으로 전자적 장치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로 취급하는 <u>보증으로</u> 한다. 다만, 업무위탁으로 취급하는 보증에 대하여는 개별 위탁기관의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 <u>개인전자보증의</u> 범위는 업무거래등록, 보증채무약정, 보증신청 및 발급, 보증취소 및 해지 신청 등 <u>보증취급에</u>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u>보증 및</u> <u>관련 서비스로</u> --. ----- ----- ----- --. ② --<u>전자거래</u>----- ----- ----- -----<u>보증취급 및</u> <u>전세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u> <u>서비스</u>-----.	용어 정비 용어 정비 전세피해예방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자거래의 내용 추가
<u>제2장 개인전자보증 신청과 심사</u>	<u><삭 제></u>	현행 제2장 제7조 및 제8조를 제1장으로 이기
<u>제7조(개인전자보증 이용신청)</u> ① 이용자가 <u>개인전자보증을</u> 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통해 이용자를 확인하고 「개인 <u>전자보증거래</u> 이용약관(별지서식 제1호)」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전자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② ~ ④ (생략)	<u>제7조(개인전자거래 이용신청)</u> ① -----<u>전자거래를</u> ----- ----- ----- <u>전자거래</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용어 정비
<u>제8조(전자거래 서비스)</u>	<u>제8조(전자거래 서비스)</u>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① 공사는 <u>개인전자보증</u>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① --- <u>전자거래</u> ----- -----. 1. ~ 6. (현행과 같음) <u>7. 주택 임대(전세)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u> <u>8. 1:1 법률상담 서비스</u> <u>9. 임대인 전세보증금지 대상 조회 및 인증 서비스</u> <u>10. 기타 전세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u>	용어 정비 안심전세가 제공하는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내용 추가
② <u>개인전자보증</u> 서비스의 명칭은 이용되는 <u>전자적 장치</u>에 따라 인터넷보증, <u>모바일 보증</u> 등으로 달리 명칭할 수 있다. <u><신설></u>	② --<u>전자거래</u> ----- ----- <u>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의 종류</u>----- <u>안심전세</u> -----.	용어 정비
<u><신설></u>	<u>제2장 개인전자보증 신청과 심사</u>	현행 제2장 이기
<u>제9조(보증의 신청)</u> <u>이용자가 전자거래를 이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u> <u><신설></u>	<u>제9조(보증의 신청)</u> ① <u>이용자가 전자거래를 통한 보증(이하 "전자보증"이라 한다)</u>----- -----. ② <u>이용자가 전자보증을 포함한 전자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u>	용어 정비 전자보증 신청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0조(보증채무약정의 체결) ① 이용자가 <u>전자거래를 통해 보증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보증채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u> ② (생략) <u>제4장 보칙</u> 제17조(보증서의 배달)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0조(보증채무약정의 체결) ① 이용자가 <u>전자보증가입-----</u> ----- -----.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7조(보증서의 배달) (현행과 같음) <u>제4장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운영</u> 제18조(주택 진단) ① <u>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주택 진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한 이용자는 제외한다.</u> ② <u>주택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주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1. <u>주택의 매매 시세</u> 2. <u>유사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경매 낙찰가율, 전세가율</u> 3. <u>등록임대주택 유무, 임대 보증금보증 가입 유무, 임대</u>	조문 정비 현행 제4장제17조를 제3장 전자보증서의 발급으로 편입하고,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관련 장을 신설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중 주택 진단 관련조문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u>보증금보증 미가입 사유</u> <u>4. 기타 필요한 정보</u> <u>③ 주택 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가진단, 결제진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따른 결제진단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u> <u>1. 자가진단 : 이용자가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무료로 주택을 진단하는 방법</u> <u>2. 결제진단 : 이용자가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 정보를 열람하여 주택을 진단하는 방법</u> 제19조(법률상담) ① <u>이용자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한 이용자는 제외한다.</u> <u>② 법률상담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별 일 1건, 월 3건으로 신청을 제한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답변을 작성 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답변을 등록하는 변호사(사내변호사는</u>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중 1:1법률상담 관련조문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u>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시 별표1의 법률상담 제한 사유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관련 상담을 반려할 수 있다.</u> 제20조(전세보증금지 조회) ① <u>공사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임대인이 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u> <u>② 전세보증금지 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지·악성임대인 등록·세금채납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u> <u>1. 임대인 본인 조회 : 임대인 본인이 전세보증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 이 경우 임대인은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u> <u>2. 임대인 조회 요청 : 이용자가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하여 임대인이 제1호의 본인 조회</u>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중 전세보증금지 조회 관련 조문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u> <u>이 경우, 이용자는 개인정보제공</u> <u>동의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u> <u>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u> <u>제9조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한</u> <u>이용자는 제외한다.</u> 3. <u>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u> <u>「주택도시보증법」 제34조의5</u> <u>(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u> <u>공개)에 따른 악성임대인 명단</u> <u>조회 서비스</u> ③ <u>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u> <u>전세보증금지 조회 후 보증금지</u> <u>대상이 아닌 자 중 일부를</u> <u>선별하여 인증서를 발급할</u> <u>수 있다.</u>	
<u><신 설></u>	<u>제5장 보 칙</u>	현행 제4장 이기
<u><신 설></u>	<u>제21조(운영기준) 이 세칙에서</u> <u>규정한 사항 외에 안심전세</u> <u>애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u> <u>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u> <u>정하는 바에 따른다.</u>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신설></u>	제22조(개인정보제공 동의) <u>이 세칙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등기변동사항 알림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 3년</u> 2. <u>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 5년</u> 3. <u>불만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 3년</u> 4. <u>그 밖에 보증신청(발급 전) 및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 2년 이내</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3년 5월 31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명시 (개인정보 보호업무지침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유기간)
<u><신설></u>	[별표 1](제19조 관련) <u>(별지와 같이 신설)</u>	“법률상담 제한 사유” 신설
[별지서식 제1호](제7조 관련) <u>개인전자보증거래 이용약관</u>	[별지서식 제1호](제7조 관련) <u>개인전자거래 이용약관</u> <u>(별지와 같이 개정)</u>	개인 전자보증거래 이용약관(인터넷 보증, 모바일보증에 사용)과 안심전세App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신설></u>	[별지서식 제2호](제9조 관련) (별지와 같이 신설)	약관을 통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전자보증 서비스)” 신설
<u><신설></u>	[별지서식 제3호](제18조, 제19조, 제20조 관련) (별지와 같이 신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진단·법률상담· 전세보증금지 임대인 조회 요청)” 신설
<u><신설></u>	[별지서식 제4호](제20조 관련) (별지와 같이 신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지 임대인 본인 조회)” 신설

개인전자보증거래 취급세칙

제정 2022. 8. 25.

개정 2023. 5.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자연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증(이하 “개인전자보증”이라 한다)의 취급 및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0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적 장치”라 함은 보증 관련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모바일 기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위하여 공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거래”라 함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보증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공사 임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거래계약에 따라 공사에게 전자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0.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보증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의미한다.<개정 2023. 5. 00.>

12. “애플리케이션(이하 “App”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한다.<신설 2023. 5. 00.>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의 대상이 되는 개별 보증의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개인전자보증의 대상) ① 개인전자거래의 대상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전자적 장치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로 취급하는 보증 및 관련 서비스로 한다. 다만, 업무위탁으로 취급하는 보증에 대하여는 개별 위탁기관의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3. 5. 00.>

② 개인전자거래의 범위는 업무거래등록, 보증채무약정, 보증신청 및 발급, 보증취소 및 해지 신청 등 보증취급 및 전세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서

비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 5. 00.>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 전자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② 전자거래시 보증서는 「보증서용지관리세칙」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전자서명의 사용)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거 이용자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7조(개인전자보증 이용신청) ① 이용자가 개인전자거래를 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통해 이용자를 확인하고 「개인 전자거래 이용 약관(별지서식 제1호)」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 5. 00.>

② 영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③ 영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 이용자가 전자거래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거래 이용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전자거래 서비스) ① 공사는 개인전자거래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5. 00.>

1. 보증가입 내역 조회/변경 : 보증일부 해지, 보증 기재사항 변경 등
2. 보증가입·갱신·취소·해지 신청
3. 입출금 서비스 : 보증료 입금, 보증료 환불 등
4. 보증이행청구
5. 고객 정보 변경 : 전화번호, 주소, 보증료 환불계좌 등
6. 보증서 발급 및 기타 서비스 : 보증서, 영수증 및 기타 서류 발급 등
7. 주택 임대(전세)보증금 안전 진단 서비스<신설 2023. 5. 00.>
8. 1:1 법률상담 서비스<신설 2023. 5. 00.>
9. 임대인 전세보증금지 대상 조회 및 인증 서비스<신설 2023. 5. 00.>
10. 기타 전세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신설 2023. 5. 00.>

② 개인전자거래 서비스의 명칭은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인터넷보증, 안심전세 등으로 달리 명칭할 수 있다.<개정 2023. 5. 00.>

제2장 개인전자보증 신청과 심사

제9조(보증의 신청) ① 이용자가 전자거래를 통한 보증(이하 “전자보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개정 2023. 5. 00.>

② 이용자가 전자보증을 포함한 전자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00.>

제10조(보증채무약정의 체결) ① 이용자가 전자보증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 5. 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과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보증신청의 처리) ① 영업부서장은 이용자의 개인전자보증

신청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자보증신청서를 수신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 13조와 관련 개별 보증의 규정 및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사가 영업시간 종료 후 개인 전자보증신청을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보증의 심사) ① 전자거래에 의한 보증심사는 신청서류의 인쇄를 생략하고 수신받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심사할 수 있다.

② 보증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통지하고, 보증심사결과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보완통지시 지정된 일시까지 보완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거절을 통지한다.

③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팩스전송 등에 의할 수 있다.'

④ 보완사항 또는 보증거절 등의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또는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원본이 필요하거나 별도 날인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서 원본을 징구하거나 날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 등의 관리) 전자거래와 관련한 보증신청서, 보증채무약정서 등 모든 전자문서는 전산장비를 통한 데이터형식으로 보관한다.

제3장 전자보증서의 발급

제14조(전자보증서의 작성방법) ① 개인 전자보증서는 각 보증별로 해당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한 일련번호와 전자보증서에 필요한 별도의 구분번호(이하 “보증서출력번호”라 한다)를 붙일 수 있다.

② 전자보증서의 보증기간연장,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은 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되, 당초 보증서와는 별도의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③ 전자보증서는 영업부서장의 전자직인을 찍어 발급한다.

제15조(전자보증서의 발급) ① 전자보증서는 전자문서로 발급하며 필요

시 이용자가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업부서장이 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영업부서장은 전자보증서가 발급되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며 보증서출력번호를 부여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영업부서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보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16조(갱신보증의 신청 등) 보증갱신 또는 감액,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보증신청, 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보증서의 재발급, 보증서의 취소·해지 신청, 보증이행청구 신청은 제7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보증서의 배달) 이용자가 신청한 보증에 대하여 보증서 배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장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운영<개정 2023. 5. 00.>

제18조(주택 진단) ①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주택 진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한 이용자는 제외한다.

② 주택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주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주택의 매매 시세

2. 유사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경매 낙찰가율, 전세가율

3. 등록임대주택 유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유무,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사유

4. 기타 필요한 정보

③ 주택 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가진단, 결제진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따른 결제진단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가진단 : 이용자가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무료로 주택을 진단하는 방법

2. 결제진단 : 이용자가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 정보를 열

람하여 주택을 진단하는 방법

- 제19조(법률상담)** ① 이용자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한 이용자는 제외한다.
- ② 법률상담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별 일 1건, 월 3건으로 신청을 제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답변을 작성 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답변을 등록하는 변호사(사내변호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시 별표1의 법률상담 제한 사유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관련 상담을 반려할 수 있다.

- 제20조(전세보증금지 조회)** ① 공사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임대인이 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보증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전세보증금지 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지·악성임대인 등록·세금채납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1. 임대인 본인 조회 : 임대인 본인이 전세보증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 이 경우 임대인은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임대인 조회 요청 : 이용자가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하여 임대인이 제1호의 본인 조회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 경우, 이용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한 이용자는 제외한다.
 3.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 「주택도시보증법」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공개)에 따른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서비스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지 조회 후 보증금지 대상이 아닌 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기준) 이 세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개인정보제공 동의) 이 세척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변동사항 알림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 3년
2.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 5년
3. 불만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 3년
4. 그 밖에 보증신청(발급 전) 및 전세피해예방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 2년 이내

부 칙<2022.08.25.>

제1조(시행일) 이 세척은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 시스템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사규관리규정 별표1에 다음의 사항을 신설한다.

분류	사규번호	사규명	공개여부	제개정 사전예고 여부	소관부서
8편 영업	8-50	개인전자보증거래 취급세척	비공개	비예고	개인보증처

부 칙<2023.05.00.>

이 개정세척은 2023년 5월 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9조 관련)

법률상담 제한 사유

1. 전·월세 계약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기와 관련 없는 질의
2.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상가·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3.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4.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
5. 구체적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해석을 구하는 질의
6.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 대한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7.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
8.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9. 기타 법률상담의 운영 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질의
[예시 2]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예시 3] 법리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실적·단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질의
[예시 4] 구체적·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닌 업무의 처리를 위한 질의
[예시 5]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한 질의

개인전자보증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거래"라 함은 공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보증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공사가 임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계약(이하 "전자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보증 관련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모바일 기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다. 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거래계약에 따라 공사에 전자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거래가 약관, 전자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보증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의미합니다.
 9. "애플리케이션"이란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공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11.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보증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공사가 별도로 작성한 보증약관을 의미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전자거래에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이 적용되는 전자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증가입 내역 조회/변경 : 보증일부 해지, 보증 기재사항 변경 등
 2. 보증가입·갱신·취소·해지 신청
 3. 입출금 서비스 : 보증료 입금, 보증료 환불 등
 4. 보증이행청구
 5. 고객 정보 변경 : 전화번호, 주소, 보증료 환불계좌 등
 6. 보증서 발급 및 기타 서비스 : 보증서, 영수증 및 기타 서류 발급 등

제4조 (전자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전자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 표시란에 체크 표시를 하여 동의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 ④ 이용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전자거래의 개시 및 철회)

- ① 공사와 이용자간의 전자거래는 공사가 이용자의 전자거래 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공사 보증가입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 ② 공사는 제1항 본문의 전자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이용자는 전자거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발급, 등록 및 관리)

- ① 이용자가 공사와 전자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접근매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유효한 접근매체를 공사가 정한 기한과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전자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7조 (공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거래를 이용할 경우 접근매체로서 전자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지정한 거래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보증거래의 경우

제8조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시스템 운영 시간 내에서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시간은 공사가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②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는 3영업일 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공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고객번호, 보증접수번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공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공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자거래의 제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사가 정한 접근매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2. 접근매체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3.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계좌가 거래 정지되거나 이용자가 공사에 알리지 않고 결제계좌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증료 등의 수납이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용자가 지정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거래 정지되거나 이용자가 공사에 알리지 않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증료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5.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공사가 판단할 때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접근매체의 재등록 또는 재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공사는 이용자가 전자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공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사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지시와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통지를 받은 때에 이를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오류의 정정) 공사는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거래 내용과 다르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정하여야 하며, 정정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전자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공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공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공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⑤ 공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은행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공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 ① 공사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4항 또는 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 공사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② 공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용자가 제1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통화내용의 녹음)

공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 ① 공사는 전자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합니다.
- ③ 공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공사 또는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이용자로부터 접수한 전자거래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4.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제11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고객 정보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타인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공사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5. 공사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나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전기통신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바이러스·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 등을 고의로 전송·게시·유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7. 공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유출·변경하거나,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도용하여 공사를 사칭하는 행위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②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적 장치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자적 장치의 관리 부실이나 타인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공사는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제공동의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 시에는 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21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 공사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습니다.

③ 공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화, 문자,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공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공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전자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공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3조 (분쟁조정)

이용자는 전자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보증서 배달에 관한 특약)

① 이용자는 공사에 보증서 배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통상 3일이내에 보증서가 배달되고, 부득이한 경우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그 상황을 확인한 후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서 배달지연 등 배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신청인이 배달장소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경우
3.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
4. 우체국 또는 운송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25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전자보증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자보증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제공하는 전자보증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관련 서비스)	보유·이용 기간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동일인식별연계정보(CI), 인증서정보(DN),	- 전자보증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전자보증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업무 거래등록, 보증신청, 보증이행청구, 보증내역조회 등 업무에 이용 - 안내문 발송,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시 이용 -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접속 빈도 파악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2년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주소(진단 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신청·내역 관리, 법률상담 신청·관리, 집주인 조회 요청	3년
성명(국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정보(CI, DN)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지 내역 조회·제공	2년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필수)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사업자등록정보, 임대사업자정보, 보증료 할인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모범납세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확인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유공자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정보	- 스크래핑(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등을 통해 서류(사진)를 전자적 방식 으로 제출하는데 이용	2년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선택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스크래핑(서류 제출 자동화)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선택)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관련 서비스)	제공항목	보유·이용 기간
(주)리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정보 변동 알림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주소(진단 주택)	3년
담당 변호사	법률상담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주소(진단 주택)	1년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진단·법률상담·전세보증금지 임대인 조회 요청)

안심전세App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안심전세App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주소(진단 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신청·내역 관리, 법률상담 신청·관리, 집주인 조회 요청	3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신청·내역 관리, 법률상담 신청·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 기간
(주)리파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정보 변동 알림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주소(진단 주택)	3년
담당 변호사	법률상담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주소(진단 주택)	1년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정보 변동 알림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전세보증금지 임대인 본인 조회)

안심전세App 전세보증 금지 대상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안심전세App 전세보증 금지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국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정보(CI, DN)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금지내역 조회·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취급제한 임대인 해당여부 및 사유(과거·해제이력 포함) 조회·제공	2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 금지내역 조회·제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 기간
나이스 신용정보(주)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1년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취급제한 임대인 해당여부 및 사유(과거· 해제이력 포함) 조회	주민등록번호	1년
국세청, 행정안전부 (민원2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스크래핑)	성명(국문),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정보(CI, DN)	이용 즉시 파기
조회 요청 임차인	전세(반환)보증 금지(제한) 내역 제공	성명(국문), 휴대전화번호, HUG 전세보증 금지현황, HF 반환보증 취급제한 임대인 해당여부 및 사유(과거·해제이력 포함)	1개월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 금지내역 조회·제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조 회 에 관 한 사 항

조회대상기관	조회목적	조회항목	동의효력기간
한국주택 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취급제한 임대인 정보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취급 제한 임대인 해당여부 및 사유(과거·해제이력 포함)	조회 즉시 종료

※ 위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 금지내역 조회·제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의
의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